##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

[시행 2025. 2. 9.] [보건복지부령 제1088호, 2025. 2. 7.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 (약무정책과) 044-202-2493

- 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「의료기기법」에 따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도모하고,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경제적 이익등의 범위) 「의료기기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3조제3항 단서(법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 및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.
- **제3조(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공개 등)** ① 법 제13조의2제1항(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 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(이하 "지출보고서"라 한다)는 별지 서식과 같다. <개정 2023. 8. 11., 2025. 2. 7.>
  -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제조업자등(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· 임대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의료인,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(이하 "의료인등"이라 한다)가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.<개정 2023. 8. 11.>
  - ③ 제조업자등은 지출보고서를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하여 5년간 공개해야 한다.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해야 한다.<신설 2023. 8. 11.>
  - ④ 의료인등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지출보고서 또는 제3항에 따라 공개된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이견이 있는 경우그 지출보고서를 작성한 제조업자등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.<신설 2023. 8. 11.>
  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 여부, 제3항 후단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정정 요청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여 지출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관리해야 한다.<신설 2023. 8. 11.>
  -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출보고서의 공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<신설 2023. 8. 11.>

[본조신설 2017. 6. 28.]

[제목개정 2023. 8. 11.]

- 제4조(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등) ① 법 제13조의2제4항(법 제15조제6항 및 제1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되,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25. 2. 7.>
 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 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.<개정 2025. 2. 7.>

[본조신설 2022. 8. 30.]

제4조의2(지출보고서 관련 업무의 수행) 보건복지부장관은 「약사법 시행규칙」제44조의4에 따른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출보고서의 공개와 관련된 업무 및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3. 8. 11.]

제5조(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 위탁계약서의 작성) 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(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(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

- 1.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상호 및 성명(법인의 경우 대표자)
- 2.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영업소 소재지, 신고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
- 3. 위탁 의료기기의 명칭 및 품목별 수수료율을 포함한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위탁 내용
- 4. 위탁계약 기간에 관한 사항
- 5.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(제9조에 따른 교육을 포함한다)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[종전 제5조는 제15조로 이동 <2025. 2. 7.>]

**제6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기준 등)**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

- 1.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
- 2.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
- ②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에 다음 각 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같다)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1. 신고인(법인의 경우 대표자)이 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2.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
-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(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)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
- 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하고,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별표 10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제7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) ①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- 1. 상호
- 2. 영업소의 소재지
- 3. 대표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- ②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법 제1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료기 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 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관청을 달리하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1. 신고증
- 2.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변경신고 내용을 적어야 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④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별표 10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5, 2, 7.]
- 제8조(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 등)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폐업,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폐업・휴업・업무재개 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신고증을 첨부(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증(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)과 별지 제5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에 그 신고내용을 적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「부가가치세법」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서에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해야 한다.
  - ④ 관할 세무서장이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휴업·폐업 신고를 받아 이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- 제9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)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(법인의 대표자나 이사,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,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. 이하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같다)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.
  - 1. 신규교육: 신고증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에 12시간
  - 2. 보수교육: 신규교육 수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6시간
 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- 1. 의료기기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
  - 2. 경제적 이익 제공 및 지출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
  - 3.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
  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- 제10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의 지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교육전문기관
  - 2. 의료기기 관련 단체
 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(이하 "교육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  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  - 2.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
  - 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(제12조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 한다)한 경우
  - 4.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한 경우
  - 5.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사실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- **제11조(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등)** ① 교육기관은 다음 연도의 교육내용, 교육비 등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교육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교육 실시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(전자문서를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)해야 한다.
  - ③ 교육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, 수료자 명단 등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.
  - ④ 교육기관은 교재비 및 강사수당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. 이경우 수강료는 실비 수준으로 교육기관의 장이 결정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- 제12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이수 인정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기나 공정거래 관련 기관·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에서 교육내용,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한 교육으로 인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과 동일하다고 인정한 교육(이하 "유사교육"이라 한다)을 이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교육기관의 장은 유사교육을 이수한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.
  - ④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신규교육에 관한 유사교육 이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・특별자치도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제13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준수사항)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위탁받은 의료기기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다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(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)에 재위탁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기기의 판매 또는 임대 촉진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기 제조업자, 수입업자,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에게 보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5. 2. 7.]

- 제14조(신고증의 재발급) ①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는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신고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신고증을 첨부(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)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장에 재발급 사유를 적어 넣어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별표 10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. [본조신설 2025. 2. 7.]
- 제15조(규제의 재검토)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3. 8. 11., 2025. 2. 7.>
  - 1. 제3조에 따른 지출보고서 공개: 2024년 1월 1일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제4조에 따른 지출보고서에 관한 실태조사: 2022년 9월 1일
- 3. 제9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교육: 2025년 1월 1일

[본조신설 2022. 8. 30.] [제5조에서 이동 <2025. 2. 7.>]

부칙 <제1088호,2025. 2. 7.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규칙은 2025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)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에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제3조(신규교육에 관한 특례)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5년 11월 8일까지의 기간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2월 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